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33

발의연월일: 2025. 1. 3.

발 의 자:김민전·권성동·이종욱

박상웅 • 주호영 • 안철수

유상범 • 신동욱 • 박정하

최보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 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 전문가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
치 등) ① (생 략)	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	②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	
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	
른 외부 전문가는 <u>1명</u> 이상 포	<u>2명</u>
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